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68

발의연월일: 2022. 5. 19.

발 의 자:김용판·서일준·임병헌

강대식 • 이주환 • 하영제

최춘식 • 유경준 • 이종성

이채익 · 김학용 · 권명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 공제하는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제66조제3항제3호).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② (생 략)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3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21년 1월 1일부터 <u>2022년</u>	3 <u>2024년</u>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2월 31일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서 40만원을 공제한다.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